

2023년 10월 18일

# 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10월 19일 조건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 
10월 18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## 제 목 : BIS 「ISO 20022(국제금융전문표준) 공통 요구사항 보고서」 발간

- 10월 17일 BIS CPMI(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)는 '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'의 일환으로 ISO 20022(국제금융전문표준) 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을 정의한 보고서\*를 발간

\* Harmonised ISO 20022 data requirements for enhancing cross-border payments

- ▶ **【금융통신전문】** 금융기관 간 자금 지급, 증권매매 등의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된 규칙과 형식에 따라 교환하는 전자적 형태의 거래정보 문서
- ▶ **【국제금융전문표준(ISO 20022)】** 국제표준화기구(ISO,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금융통신전문(message)에 관한 국제 표준
  - 국가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상이한 금융통신전문(기재형태, 정보유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) 각국 지급결제서비스간 국제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 확보를 목표로 함
- 그간 국제금융통신망인 SWIFT를 비롯,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ISO 20022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금거래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ISO 20022 전문형식을 채택하거나 전문에 포함하는 정보항목이 불일치\*\*하여 국가간 전문처리과정에서 여전히 비효율이 상존
  - \* 예) 착오 등으로 잘못 송금된 자금의 반환시 자금반환신청 전문(pacs.004)을 사용하는 국가와 통상적인 일반자금이체 전문(pacs.009)을 사용하는 국가가 혼재
  - \*\* 예) 금융기관 정보 기재시 영국 결제시스템(CHAPS)은 BICFI (Business Identification Code for Financial Institution, 글로벌 금융기관 식별기호) 기재를 의무화한 반면, 미국 결제시스템(Fedwire)은 BICFI 정보 기재가 선택사항
- 각 회원국들이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ISO 20022 도입시 BIS의 공통 요구사항을 함께 채택할 경우 이러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문의처 : 금융결제국 지급결제개선반 반장 박준홍, 과장 방수연  
Tel : 02-750-6634, 6673  
공보관 : Tel : 02-759-4028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- 한국은행은 BIS가 금번 발표한 'ISO 2022 공통요구사항'을 반영하여  
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(BOK-Wire+)에 2026년말(잠정)까지\* ISO 2022  
도입을 완료할 계획(한은금융망 및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)

\* BIS는 회원국들이 금번 'ISO 2022 공통 요구사항'을 2027년말까지 채택할 것을 권고

-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ISO 2022 전문을 사용할  
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중 '참가기관을 위한 ISO 2022 전문  
도입 가이드라인'을 발표할 예정

<참고>

### BIS의 'ISO 2022 공통 요구사항'의 주요 내용

- 1) 적절한 ISO 2022 전문양식의 사용
- 2) 국제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표준코드의 사용 확대
- 3) 전문에 기재하는 문자(character)로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
- 4) 자금결제요청 및 완료시간을 협정세계시(UTC\*) 등 공통시간대로 표기  
\* **Universal Time Coordinated**
- 5) 거래전문에 글로벌 고유전문식별번호(UETR\*) 사용  
\* **Unique End-To-end Reference** : 난수표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16자리 고유번호로  
글로벌 금융거래 식별에 용이
- 6) 송금 수수료 정보의 상세한 기재(송금 및 환전 수수료, 순(net)송금액 등)
- 7) 수취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등을 기재
- 8) 지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 기재(BICFI, LEI 등 국제식별기호 사용)
- 9) 지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 기재(법인명, 소재지 등)
- 10) 지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기재(이름, 거주지역 등)
- 11) 구조화된 주소정보를 사용(자금세탁방지, 테러자금지원여부 등 심사 목적)
- 12) 송금 세부정보(거래송장번호(Invoice number) 등)를 자금의 최종수취인까지  
누락 없이 전달

-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

BIS CPMI publication link : <https://www.bis.org/cpmi/publ/d218.htm>